

광주지방법원 2023. 8. 22 선고 2020가단508814 판결 [부속물매수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4. 11. 28 선고 2023나85214(본소), 2024나85792(반소)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3. 8. 22 선고 2020가단508814 판결

전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, 담당변호사 서일석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, 담당변호사 백동근

변론종결 2023. 6. 27.

판결선고 2023. 8. 22.

주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 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2%의

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가 2013. 7. 12.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C 외 2필지 상의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보증금 15,000,000원,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부속시켰으므로 민법 제646조 제1항 소정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며, 피고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대금 100,000,000원의 지급을 구한다.

살피건대, 갑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부속에 동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호석

목 록

1. 포장실(에어커튼 포함) 설치
2. 부자재 창고의 중천장 시공
3. 작업장 벽면 내측 칸막이 시공
4. 바닥 타일시공, 지육실 등 냉동기 추가 설치
5. 금속검출기 및 라운드 컨베이어 설치
6. 알콜 분무 시스템 설치
7. 포충기 설치
8. 환풍기 설치
9. 기타장비(온도모니터링시스템, 고온고압세척기, 전기순간온수기, 살균소독기 등). 끝.

